

2024. 4. 30. (화)
제314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제4차 복지환경위원회

심사보고서

【대상안건】

- 『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』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(안)

복지환경위원회
(전문위원 김태우)

『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』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(안)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3월 2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4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4. 30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예은희 여성가족과장)

가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제12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인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,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제안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
- 「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제19조(시립어린이집의 설치)
-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(의회 동의)

다. 위탁개요

○ 시설현황

위탁대상	위 치	세대수	예상 정원	보육시설현황	
				연면적	규모
(가칭) 시립퀘렌시아어린이집	북구 양학로 35	659	30명	151.62㎡	지상1층

○ 위탁사무

위탁사무 내용
<p>어린이집 운영 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-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(장애,야간,영아,다문화) - 입소한 영·유아의 교육 및 영양, 건강, 안전관리 -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- 어린이집 종사자, 이용아동,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(보건) 관리 - 보육교직원의 고용(승계), 복무, 후생 등에 관한 사항 -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특수보육시책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사 업 비 : 85,000천원(국 50%, 도 15%, 시 35%)

- 리모델링 : 75,000천원

- 기자재비 : 10,000천원

○ 위탁구분 : 신규위탁

○ 위탁기간 :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

○ 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

○ 심사방법

- 1차 서류 : 신규위탁 신청서에 의거한 정량평가

- 2차 PPT 소견발표 : 보육정책위원회 심의(전문성 및 운영능력 평가)

- 심사내용 : 운영 및 사업실적, 운영체(원장)의 전문성, 운영계획, 공신력, 재정능력 등
- 수탁자 선정 방법
 - 『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』를 준용하여 **채점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 선정**(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)

라. 향후 일정

- 2024. 5월 :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4. 5월 :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결정
- 2024. 6월 ~ 9월 : 사업비 교부, 리모델링 등 개원 준비
- 2024. 9월 : 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태우)

- 본 동의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제12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힐스테이트포항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,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제2항에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.
- 위탁체 선정은 『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』에 따라 「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」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,

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